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000
----------	------

제출년월일 : 2001. . .

제 출 자 : 안산시장

제정이유

-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 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와 수탁자의 의무를 정함 (안 제3조).
- 다. 위·수탁 협약의 해지 사유를 명기함 (안 제5조).
- 라.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하수도법 제7조
-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제3항
-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조의2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1. 9. 28 - 10. 18(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 (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운영) ①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안산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기관)의 선정은 하수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할 자격을 갖춘 자(기관)중에서 선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위·수탁) ①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위·수탁 당사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2. 우수중계펌프장, 우수 토구펌프장 및 간선관거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하·폐수의 처리
4. 유입 하·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5. 하수처리 및 오니처리 공정관리
6.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연구·개발
7.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8. 방류수 및 방류관거 관리
9.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유지
10.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환경정비(조경포함)
11.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적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12. 기타 시장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수탁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①하수종말처리시설의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 또는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②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등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에게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위·수탁 협약의 해지) ①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위·수탁 협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수수료등)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시장이 원가분석등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점검 등) ①시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소관 실·과		하수처리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하수처리과장 이태운
	담당·팀장 직위·성명	하수처리담당 김봉근
	담당자 (전화번호)	김봉근 (행정2581)